

졸업유예운영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대신대학교(이하 “이 대학교” 라 한다) 소속 학생의 졸업유예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졸업유예”라 함은 학칙 제51조에 규정된 졸업요건을 충족하는 자가 본인의 원에 의하여 해당 학기 졸업시기에 졸업을 하지 아니하고, 일정 기한까지 졸업을 연기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졸업유예”는 졸업요건을 갖춘 학생으로서 사회복지사 2급, 평생교육사 2급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교과목을 이수하기 위하여 계속 수학하기를 원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제4조 (유예기간) 졸업유예는 학기 단위로 2회까지 할 수 있다.

제5조 (신청자격) 8학기 이상 등록한 자로서 본인의 원에 의하여 졸업을 유예하고자 하는 자

제6조 (신청시기) ① 최초 신청은 8학기 이상 등록하고, 졸업 요건을 충족하는 해당 학기 기말고사 기간 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2회째 신청은 최초로 졸업 유예된 학기의 다음 학기 기말고사 기간 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 (유예신청 및 취소 절차) ① 졸업유예를 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학기마다 졸업유예를 신청하여야 하며 적용기간은 해당학기에 한 한다.

② 졸업유예가 허가된 학생 중 불가피한 사유로 졸업유예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학위수여일 1개월 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 (유예조건) ① 졸업유예자는 졸업유예 기간 동안 휴학할 수 없다.

② 졸업유예자가 취득한 학점은 성적에 반영한다.

제9조 (등록금) 졸업유예자의 등록금은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4조 7항에 의거하여 수강신청 학점에 따라 등록금을 차등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 (학위수여) 졸업유예자의 학위 수여는 졸업유예 신청 다음 학기에 수여한다.

제11조 (권리와 의무) 졸업유예자는 재학생과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제12조 (기타 사항)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졸업유예와 관련된 일반적인 사항은 학칙 및 이 대학교 제 규정에 따른다.

부 칙

1. 이 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